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이 자료는<br>2005. 7. 15(금)<br>조간부터 보도하여<br>주시기 바랍니다. | 報 道 參 考<br>資 料 | 생 산 일 | 2006년 7월 13일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생산부서  | 세제실 관세협력과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과장  | 이원태(2110-2229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담 당 자 | 이근후(2110-2231) |

## 題 目 :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 결과 비준 추진

□ 재정경제부는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을 마무리('05.6.15일 최종양허표 확정)하고 2006년 협정발효를 위해 국내비준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

※ 방콕협정은 유엔 아시아·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(ESCAP) 산하 개도국간特惠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, 인도, 스리랑카, 방글라데시, 라오스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

□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('02.1월)을 계기로 회원국간 관세特惠 확대를 위해 3라운드 협상을 개시하였으며, 동시에 협정 활성화를 위해 협정문 본문 개정 작업도 동시에 추진하였음

○ 각 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特惠관세양허가 발효되면 중국, 인도 등 거대 시장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

\* 중국: 對중국 총수출액의 46.7% 품목에 대해 평균 28.4% 관세인하 효과 발생

\* 인도: 對인도 총수출액의 6.1% 품목에 대해 평균 14.5% 관세인하 효과 발생

○ 또한, 협정문 개정을 통해 협정 명칭을 「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(Asia-Pacific Trade Agreement)」으로 변경하고, 최소 2년에 1회 각료회의를 개최기로 하였음

※첨부: 개정 방콕협정 비준 추진계획

# 개정 방콕협정 비준 추진계획

## 1. 협상 추진 경위

□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('02.1월)을 계기로 관세특혜폭과 특혜 품목 확대를 위한 제3라운드 협상 개시

○ 동시에 협정 활성화의 일환으로 협정개정 작업 추진

□ 이후 제22차 상임위('04.7월)에서 관세양허협상과 협정문 개정을 마무리하고, 제23차 상임위('05.1월)에서 최종 통합양허표 작성 방법 및 향후 일정에 대해 합의

○ 금년 중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개정협정문과 관세양허표에 서명하고, 2006.1.1일부터 발효 계획

## 2. 협상 결과

□ 제3라운드 관세양허 협상결과

○ 회원국간 총 1911개 품목 관세특혜 양허로 회원국간 교역확대 효과  
- 특히, 대중국 수출의 46.7%에 대해 28.4% 관세인하 효과 기대

(2004년도, HS 6단위 기준)

| 국 가   | 양허품목수 | 평균관세율(%) | 평균특혜폭(%) | 수출(입)비중(%)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한 국   | 491   | 6.9      | 36.4     | 31.6       |
| 중 국   | 711   | 10.0     | 28.4     | 46.7       |
| 인 도   | 399   | 14.5     | 10.0     | 6.1        |
| 스리랑카  | 233   | 17.9     | 9.3      | 18.9       |
| 방글라데시 | 77    | 12.9     | 14.3     | 6.0        |

## □ 협정문 개정 주요 내용

|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협정 명칭 변경  | ESCAP 개발도상 회원<br>국간 무역협상에 관한<br>1차 협정(방콕협정) | 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<br>(Asia-Pacific Trade Agreement) |
| 각료회의 신설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 2년에 1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동원산지규정도입 | 자국 국내법에 따라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가가치 45% 기준 (최빈개도국은 35%)                       |
| 협정포괄범위확대  | 관세 및 비관세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비스교역, 무역원활화 등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3. 향후 추진 계획

### □ 협정 비준 및 국내법 수용절차 추진

-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10월 말까지 비준완료를 목표로 비준절차 추진 (현재 관계부처협의 완료)

※ 비준 절차 : 관계부처 협의 → 외교부 검토 → 법제처 심사 → 국무회의 심의 → 대통령 재가 → 국회 비준 동의

- 제1차 각료회의에서 서명(11월 초 중국에서 개최 예정)

- 개정 협정문과 관세양허표에 대한 서명 추진

- 2006.1.1일 발효에 차질이 없도록 각료회의 직후 관련 대통령령 개정